

「구미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: 2025년 7월 7일

나. 발 의 자: 김정도 의원

다. 찬 성 자: 김근한·김민성·김영태·이명희·이상호·이지연·
장미경·허민근 의원(8인)

라. 회부일자: 2025년 7월 8일

마. 상정일자: 2025년 7월 16일

제289회 구미시의회 임시회

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 설명의 요지

가. 제안 설명자: 김 정 도 의원

나. 제안이유

- 발달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것이 곤란한 사람에게 최소한 권리를 보장하고 지원하여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는데 이바지하고자 함.

다. 주요내용

- 발달장애인 자기결정권 보장 명시(안 제4조)
-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·시행(안 제5조)
- 구미시 발달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설치(안 제13조)

라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
 - 「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
- 기 타: 조례안 예고(2025. 7. 8. ~ 7. 13.) 결과 의견없음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박 영 훈

○ 본 개정조례안은

- 발달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것이 곤란한 사람에게 최소한 권리를 보장하고 지원하여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는데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,

○ 검토 결과,

- 발달장애는 다른 장애와 달리 의사표시가 어렵기 때문에 별도로 「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이 제정되어 있으며, 법 제4조에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을 위한 지자체의 책무에 대해 규정하고 있어 발달장애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타당한 개정이라고 판단됨.

- 특히 지원 계획과 관련하여, 기존에는 지역사회 보장 계획에 따라 4년마다 수립하던 방식을 개선하여, 장애인복지 종합계획에 포함시키고,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정책의 일관성과 실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됨.
- 집행기관에서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수립하여 구미시 발달장애인 지원 정책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.

4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

5. 토론요지: 생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: 생략

7. 심사결과: 원안가결